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3 선고 2021가합1028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3. 30 선고 2022나1004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3 선고 2021가합102842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은

피 고 1. B

2. C교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소리나

변론종결 2021. 10. 29.

판결선고 2021. 12. 3.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8.부터 2021.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6. 7.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3. 피고 교회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0. 접수 제53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D 사이의 분쟁 등

1) D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2) D은 1991. 2. 2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20. 1. 22. E유치원의 설립자를 피고 B로 변경해주었다.

3) D은 2020. 1.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8740호로 2018.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D은 2020년 6월경 피고 B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2470).

나. 소송위임계약 등의 체결 및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1) 변호사인 원고(수임인)는 2020. 4. 22. 피고 B(위임인)와, 이 사건 소송의 1심(이하 ‘이 사건 1심’이라고 한다) 및 E유치원 관리 및 폐원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계약(민사)(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표시

1. 부천시 F동 소재 E유치원의 소유권 및 교육지원청과의 행정절차에 관련된 일체의 사건
2. E유치원의 관리 및 폐원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소송의 경우 제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 (위임한계)

1. 갑(피고 B)이 을(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2. E유치원의 정상화 또는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원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위임사무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1. 소송의 경우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2. E유치원의 정상화 또는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원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절차 및 행정소송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

제6조 (착수보수)

1.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단 이는 2020. 4. 3., 4. 기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한다.

제7조 (성과보수)

1. 성과보수

위임사무 중 소송에 대하여는 성과보수가 없다. 다만 E유치원의 관리를 통해 E유치원이 정상화되거나, 정상화가 불가능하여 폐원할 경우에는 성과보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E유치원 정상화 및 폐원의 기준은 2021. 12. 31. 이전으로 한다.

2) D은 2020. 12. 2. 이 사건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5315].

3) 원고(수임인)는 2021. 5. 9. 피고 B(위임인)와,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민사)(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표시			
사건	1. 부천지원 2020가합102470(이 사건 1심) 2. 서울고법(인천) 2020나15315(이 사건 항소심) 3. 부천지원 2020카합10518 4. 부천지원 2020카합10119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5. G외 1필지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당사자	피고 B	상대방	D, 구로세무서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2심(2020나15315), 1심(2020카합10518)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6조 (착수보수)

1. 갑(피고 B)은 을(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부천지원 2020가합102470 : 400만 원(부가세 별도)

나. 서울고법(인천) 2020나15315 : 400만 원(부가세 별도)

다. 부천지원 2020카합10518 : 200만 원(부가세 별도)

라. 부천지원 2020카합10119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400만 원(부가세 별도)

마. G외 1필지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제7조 (성과보수)

1. 성과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아래의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가. 서울고법(인천) 2020나15315 사건 :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해당 사건의 1심 성공보수로 갈음한다.

나. G외 1필지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 :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혹은 면제되는 금액 전부를 성과보수로 한다.

다. 부천지원 2020카합10119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승소 금액의 10%

2.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제1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나.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라.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항소심은 양 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2021. 3. 25., 2021. 4. 8.)으로 2021. 5. 11. 항소취하간주되었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1심 판결은 2020. 12. 24. 확정되었다.

다. E유치원에 대한 직권폐쇄 등

- 1) 피고 B는 2020. 2.경 무단으로 E유치원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 2)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0. 3. 6. 피고 B에게 E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유치원을 무단으로 폐원할 경우 1년 이내의 운영정지 혹은 직권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 3)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1. 6. 8.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유치원 무단 폐원 및 3개월 이상 교육과정 미운영’을 이유로 E유치원에 대하여 직권폐쇄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4) 피고 B는 2021. 8. 17.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지 않고 E유치원을 폐원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피고 B는 2021. 6. 10.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53161호로 2021.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유아교육법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1심 소송 및 E유치원 폐원처리에 대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항소심, 가처분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0카합10518),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4992)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E유치원이 폐원되었고,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B가 승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심에 관한 선임료 400만 원, E유치원 폐원처리에 관한 성과보수 1억 5,000만 원,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한 선임료 400만 원 및 승소 성과보수 1억 5,000만 원,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선임료 200만 원, 위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선임료 400만 원의 합계 3억 1,4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받은 선임료 400만 원을 제외한 3억 1,000만 원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100만 원을 더한 3억 4,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송 등에 관한 선임료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 따라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1심과 항소심, 가처분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합10518),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4992)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선임료는, 이 사건 1심에 관한 선임료 400만 원,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한 선임료 400만 원,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선임료 200만 원, 위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선임료 400만 원의 합계 1,400만 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선임료 중 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임료 1,000만 원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을 피고 B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유치원 폐원처리 성과보수

앞서 본 이 사건 1차 계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7조의 유치원 폐원처리 성과보수 약정은 E유치원의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폐원에 관한 행정절차 업무를 원고가 처리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해 2021.

12. 31. 이전에 E유치원이 폐원되면 피고에게 성과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해석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부천교육지원청의 H 주문관이 2021. 3. 12.부터 2021. 6. 4.까지 E유치원 폐원 처리에 관하여 메일을 3회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E유치원이 2021. 6. 8. 직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유치원을 무단으로 폐원하고, 3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청은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직권폐쇄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E유치원이 운영정지가 아니라 직권폐쇄의 처분을 받은 것이 원고의 업무수행 덕분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 B에게 2021. 6. 16.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2021. 6. 17. 보낸 이메일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유치원 폐원처리 성과보수는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유치원 폐원처리에 관하여 유치원 폐원처리 성과보수 약정을 충족할 정도로 폐원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승소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의 발생

앞서 본 이 사건 2차 계약의 제7조는, 이 사건 항소심의 승소 성공보수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이를 해당 사건의 1심 성공보수로 갈음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1심에 대한 승소 성공보수는 없었다. 따라서 위 성공보수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한 승소 성공보수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항소심은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2차 계약 제7조에 따르면 이는 위임인(피고 B)의 승소로 보아야 하므로, 위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성과보수 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

나) 승소 성과보수 약정의 무효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한 승소 성과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성과보수금 감액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한 승소 성과보수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당액의 범위로 감액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항소심은 양 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항소심의 진행경과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문서송부촉탁을 1회 신청하고,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하였을 뿐 별다른 변론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항소심 진행과정을 피고에게 공유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변론내용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승소 성공보수금 1억 5,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금액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등에 관한 선임료 1,100만 원 및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한

성과보수 5,000만 원을 더한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1. 6. 8.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3억 4,100만 원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있는데,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임에도 2021. 6. 7. 피고 교회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교회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유무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피고 B에 대하여 6,100만 원 상당의 선임료 및 성공보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2) 사해행위 여부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9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I근린생활시설 제지하2층 J호 74.7995㎡ 상가’(이하 ‘I 상가’라고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실제 채무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보전채무 374,320,110원 상당의 압류등기가 경로되어 있었고, 위 채무액의 합계는 I 상가의 당시 시세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I 상가 이외에 피고 B의 재산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피고 교회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수, 판사 박찬범, 판사 김태현

목 록

1. 부천시 G 대 438㎡

2. 부천시 G, K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노유자시설

1층 166.50㎡(유치원 104.34㎡ 주차장 62.16㎡)

2층 166.50㎡ 유치원

3층 166.50㎡ 유치원

4층 166.50㎡ 유치원

지하 166.50㎡ 유치원

